집행 이사회 결의 - RDC N° 237, 2018년 7월 16일

**(2018 년 7 월 17 일 DOU n° 136 발행)**

2015 년 2 월 10 일의 집행 이사회 결의안 - RDC n° 7, 2015 년 4 월 24 일의 집행 이사회 결의안-RDC No. 15을 개정한다

**국립보건감시원의 집행 위원회는**, 1999 년 1 월 26 일자 법률 No. 9,782의 제15조 III, IV 및 제 7조 III, IV 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여, 그리고 2016 년 2 월 3 일 집행 위원회 결의안 RDC No. 61의 결의안 부록 I- 에 따라 승인된 내부 규정의 53조, V, §§ 1 및 3에 의거하여, 2018 년 7 월 3 일에 열린 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, 다음과 같은 집행 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의하며, 본인인 부위원장은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.

제1조. 개인 위생 용품, 화장품 및 향수의 판매를 위하여 등록 대상임을 결정하는 2015 년 2 월 10 일자의 RDC No. 7집행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부속서 VIII은 다음의 조항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:

“부속서 VIII

등록 대상 2 급 제품

1. 선탠 로션.

2. 선 스크린.

3. 어린이용 자외선 차단제.

4. 방부제 핸드 젤.

5. 머리 교정 제품.

6. 머리 교정 및 염색 제품.

7. 방충제.

8. 어린이 방충제. "(NR)

제 2조. 2015 년 4 월 24 일자 집행 이사회 결의안 - RDC No. 15의 규정은 다음의 조항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:

"개인 위생 제품, 화장품 및 아동용 향수를 규정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 및 기타 조치 사항을 규정한다." (NR)

제3조. 집행 이사회 결의안 – 2015년 RDC No. 15의 1조는 다음의 조항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:

"1조. 집행 이사회의 이 결의안은 개인 위생 제품, 화장품 및 이 규정에서 '아동용 제품'이라고 하는 아동용 향수의 합법화를 위하여 공식화, 안전 및 라벨링과 관련되는 기술적 요건을 제정한다." (NR)

제 4조. 집행 이사회 결의안 - 2015년 RDC No. 15, 2015의 16조 §2은 다음의 조항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:

“16조.

§ 2 ° 개인 위생 제품, 화장품 및 향수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서두에 기술된 일자를 준수할 필요에 관계없이, 이 결의안에 따라 그들 제품의 정규화, 재 검증/ 갱신 또는 변경을 이미 요구할 수도 있다.

제 5 조 본 결의안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고 본 결의안의 효력 발생 전에 신청된 제품의 등록 및 재인증 신청은 기존 절차를 따르며, 해당 적용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, 등록 및 재인증이 허용된다.

제 6조. 본 규정의 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재인증되는 등록과 본 규정의 발효 당시의 기록은 원래의 유효성을 유지한다.

§ 1 본 조문의 서두에 언급된 제품에 대한 등록 후 변경은 현재 등록 프로세스의 2 차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
§ 2 본 조문의 서두에 언급된 기록은 만료 후에, 재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는 재인증되지 않으며,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- 2015년 RDC No. 7및 이의 업데이트 된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제품의 새로운 합법화가 필요하다.

제 7 조. 본 규정에 의해 등록이 면제된 제품은 본 규정의 발효 후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.

단일 단락. 본 조문의 서두에 언급된 제품의 합법화는 등록이 면제된 제품에 대한 집행 이사회의 결의 – 2015년 RDC No. 7 및 이의 업데이트된 조항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.

제 8조. 동일한 제품은 등록 상태로 동시에 합법화되지 않고, 등록 면제한다.

§ 1 등록 면제로 합법화하고자 하는 등록 제품의 보유자는 등록 면제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.

§ 2 동일한 보유자에 의해 등록 면제로 이미 합법화된 제품의 등록에 대한 청원은 거부된다.

제 9조. 집행 이사회 결의안 - RDC No. 7, 2015의 부속서 II의 "2 등급 제품 유형의 목록"의 항목6 "태양광/반-태양광 차단제"는 취소한다.

제 10조. 본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은 공표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발효한다.

페르난도, 멘데스 가르시아 네토